

Visa-Cash 표준 가맹점약관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품의완료후 즉시

2. 개정내용

변경전	변경후	비고
제1조 ~ 제20조 (내용생략)	제1조 ~ 제20조 (좌 동)	
<p>제21조(약관변경)</p> <p>①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에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적용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그 내용을 가맹점에 개별통지함과 동시에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적용 예정일 전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리고, 그 밖에는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립니다.</p> <p>②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약관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할 경우 “가맹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” 는 내용을 통지합니다.</p> <p>③ 은행은 가맹점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</p>	제21조 (내용삭제)	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 28조 준용으로 내용삭제
제22조 (내용생략)	제21조 이하 (좌 동)	이하 조 체상
제23조 (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)	제22조 (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)	

<p>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,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.</p> <p>제24조 (내용생략)</p>	<p>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<u>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</u>, 전자금융거래법,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</p> <p>23조 (좌 동)</p>	<p>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추가</p>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